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. 2. 8

○ 회부일자 : 2000. 2. 9

3. 제안이유

○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행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선·보완하여 퇴직준비휴가제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

○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삽입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(제23조 제2~3항)

- 임신중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허용하도록 강제규정
-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용 (신설)
-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중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허용

○ 20년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 (제23조 제7항)

- 1회에 한해 10일간 ⇨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
-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자 포함

○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삽입규정 명문화 (제24조)

- 30일 이상 계속 및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일수에 포함

- 그 외의 휴가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 60일간의 출산휴가 허가를 강제 규정 하였고
-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
-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휴가제도를 1회에 한해 10일간을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하고,
- 경조사별 휴가중 사망과 탈상의 경우 “직계존속”의 대상을 세분화 하려는 것임.

### ○ 이는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(대통령령, '99. 12. 7)에 따라
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불 부합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